

< 변경 대비 표 >

1. 변경 대상 투자신탁 : 키움 퇴직연금40 증권 자투자신탁 제B-1호[채권혼합]
2. 효력발생예정일: 2026년 10월 08일
3. 주요 변경사항: Class C-P2e, Class C-P2i 신설
4. 변경내용

[집합투자규약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3조(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)	①~③ <생략> ④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~3. <생략> <u>4. <신설></u> <u>5. <신설></u>	①~③ <현행과 같음> ④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~3. <생략> <u>4. Class C-P2e(퇴직연금) 수익증권: 판매회사의 전자매체(온라인)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 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</u> <u>5. Class C-P2i(퇴직연금) 수익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10억원 이상 매입한 자 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</u>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① <생략> 1~3. <생략> <u>4. <신설></u> <u>5. <신설></u> (이하 생략)	① <현행과 같음> 1~3. <현행과 같음> <u>4. Class C-P2e(퇴직연금) 수익증권</u> <u>5. Class C-P2i(퇴직연금) 수익증권</u> (이하 생략)
제39조(투자신탁보수)	①~② <생략> ③ <생략> 1~3. <생략> <u>4. <신설></u> <u>5. <신설></u>	①~② <현행과 같음> ③ <현행과 같음> 1~3. <현행과 같음> <u>4. Class C-P2e(퇴직연금) 수익증권</u> 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3.0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0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2</u> <u>5. Class C-P2i(퇴직연금) 수익증권</u> 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3.0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1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2</u>
부칙	<u><신설></u>	<u>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6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한다.</u>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
운용전문인력	-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<신설>	- 판매경로 - 온라인(e):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 - 기타 - 고액(i):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침에 따른 고액거래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<신설>	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-P2e(퇴직연금))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, 고액 (C-P2i(퇴직연금))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<신설>	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-P2e(퇴직연금))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, 고액 (C-P2i(퇴직연금))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 Class C-P2e, Class C-P2i 신설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<신설>	- 판매경로 - 온라인(e):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 - 기타 - 고액(i):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침에 따른 고액거래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11. 매입, 환매, 전환기준 1). 나. 종류별 가입자격	<신설>	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-P2e(퇴직연금)): 판매회사의 전자매체(온라인)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 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, 고액 (C-P2i(퇴직연금))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10억원 이상 매입한 자 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<신설>	<아래 표 1>

1)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)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<신설>	<아래 표 2, 3>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3)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4) 운용자산규모	-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
<표 1>

1)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
종류	가입자격	수수료율			
		선취판매 수수료	후취판매 수수료	환매수 수수료	전환 수수료
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 (C-P2e(퇴직연금))	판매회사의 전자매체(온라인)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 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	-	-	-	-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, 고액 (C-P2i(퇴직연금))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10억원 이상 매입한 자 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	-	-	-	-

<표 2>

클래스	지급비율 (연간, %)									
	집합투자업자 보수	판매회사 보수	신탁업자 보수	일반사무관리 회사 보수	총보수	동종유형 총보수	기타 비용	총보수·비용	합성 총보수·비용 (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)	증권거래 비용
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 (C-P2e(퇴직연금))	0.3000	0.2000	0.0200	0.0000	0.5200	-	-	0.5200	0.5271	-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, 고액 (C-P2i(퇴직연금))	0.3000	0.0100	0.0200	0.0000	0.3300	-	-	0.3300	0.3371	-

<표 3>

<1,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>

(단위 : 천원)

구분	투자기간	1 년	2 년	3 년	5 년	10 년
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 (C-P2e(퇴직연금))	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	53	109	168	295	670
	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·비용	54	111	170	299	680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	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	34	69	107	187	425

퇴직연금, 고액 (C-P2i(퇴직연금))	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·비용	35	71	109	191	435
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	----	-----	-----	-----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
운용전문인력	-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<u><신설></u>	- 판매경로 - 온라인(e): <u>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</u> - 기타 - 고액(i): <u>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침에 따른 고액거래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u>